전남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



[시행 2024.12.10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65호, 2024.12.10, 제정]

전남대학교 062-530-107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남대학교 학칙」제80조에 따라 학생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징계사유) 학생이 재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
- 1.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- 2. 시험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업 또는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
- 3. 언어적·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
- 4.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되어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에 따라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
- 5. 기타 학교의 명예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
- 제3조(학생징계위원회 구성) ①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(이하 "징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.
 -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 -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 단, 위임장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 - ⑤ 징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학생팀장이 된다.
- **제4조**(징계혐의의 조사 및 고지) ① 학생처장은 학생이 제2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학생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③ 학생처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④ 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에 의한 조사 결과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5조(징계의결등의 요구) 학생처장은 제2조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1. 학생 징계의결 요구서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학과(부)장 의견서 및 경위서
 - 3. 학생의 인적 정보 자료
 - 4. 그 밖의 사건 내용 관련 자료 등
- **제6조**(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)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징계대상자는 서면진술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징계대 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를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징계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
- 2.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고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
- 3.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.
- **제7조**(징계등의 기준)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징계요구의 내용, 위반 행위 정도 및 과실 여부, 평소 행실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학생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**제8조**(징계종류 및 효력) ①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의 그 기 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1. 근신은 3일 이상 6일 이내로 하며,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수업 이외의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 - 2.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며,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 - 3.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하며,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 - ② 휴학 중인 학생이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**제9조**(징계처분)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심의·의결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대상 자의 징계를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.
 - 1. 학생 징계의결서(별지 제2호 서식)
 - 2. 징계위원회 회의록
 - 3. 본인 진술서 등
 - ② 총장은 징계를 제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, 그 처분을 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된다.
 - ③ 총장은 징계대상자를 징계처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과 그 학생이 속한 대학(원)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징계처분의 재심의) ① 총장은 징계 의결 결과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무기정학의 해제) ① 무기정학 중인 학생의 정학 해제를 위하여 학과(부)장 또는 주임교수는 징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.
 - ② 학과(부)장 또는 주임교수는 제1항에 따라 징계해제를 요청할 경우 학과(부) 교수회의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 - 1. 징계위원회의 회의
 - 2. 징계위원회 명단 및 참여한 위원의 명단
 - 3. 징계위원회의 회의록
 - 4.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②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.

- 제13조(징계의 기록) 총장은 징계 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징계 대장(별지 제6호 서식)을 관리하여야 하고,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징계 사실을 기록한다.
- 제14조(준용) ① 학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(대학원, 본부 직할학부 포함) 교수회의에서 학생 징계를 심의 ·의결할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이 경우 제4조, 제5조의 학생처장은 '대학(원)장'또는 '학부장'으로, 제4조 부터 제7조, 제9조부터 제12조의 징계위원회는 '대학(원) 교수회의'또는 '학부 교수회의' 또는 '대학원위원회'로 본다.
 -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 <제2065호,2024.12.1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